

예산총칙

2022년도 본예산

제 1 조 2022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75,845,516	17,275,365
일반회계	554,071,654	16,622,150
특별회계	21,773,862	653,216
기타특별회계	21,773,862	653,216
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	520,100	15,603
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	485,641	14,569
기반시설부담구역특별회계	43,221	1,297
주차장특별회계	20,724,900	621,747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"계속비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4 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"명시이월사업조서"와 같다.

제 5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,781,414천원으로 한다.

제 6 조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22,0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7 조 지방재정법 제47조2에 따라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.